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 운영 및 어업인에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 표시가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포상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어구보증금제도의 위반행위 근절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이다. 신고포상금은 2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051-718-2452)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fginfo112@fira.or.kr), 누리집(www.fdp.or.kr),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4년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 34,856개에 대해 회수촉진포인트로 14,168,600원이 지급되었다.

회수촉진포인트는 어업인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여 어구 유실에 따른 손실과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자발적인 폐어구의

수거·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전국 184개소)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번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통해 우리 어장도 깨끗하게 지키고 포인트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경만 (044-200-5603)
		담당자	사무관	임수연 (044-200-5608)



참고 1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 유형별 포상금 지급 금액

관련 법 조항	유형	구분		포상금액	포상금 결정 기준	
		과태료	행정처분			
수산업법 제72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1차 위반	50만원	영업정지 1개월	30만원	과태료 부과기준 및 행정기관의 집행통보
		2차 위반	70만원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100만원	영업정지 3개월		
수산업법 제81조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100만원	-	2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		

* 「수산업법」 제72조 관련,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동시 집행될 경우, 해당 포상금은 1회 지급 원칙

참고 2 신고포상금제 운영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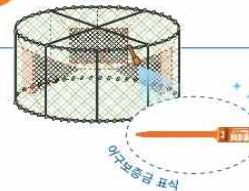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행위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 가세요!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100조(포상)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73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근거규정 :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 신고 요령 ·

신고 대상

- 보증금 표시가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생산·판매한 어구를 기록 관리하지 않는 자
-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자



신고 방법

- 센터로 전화, 인터넷(이메일, 홈페이지), 우편, 직접 방문
- 신고서와 위반행위 입증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 함께 제출

*신고서는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별지 제1호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인터넷포털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력 → 해당 규정 검색 → 서식확인)


포상금

- 20~30만원 지급(위반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

*수산업법 제72조 관련,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이 동시 집행될 경우, 해당 포상금은 1회 지급

· 신고는 여기로! 어구보증금 신고센터 ·

☎ 051-718-2452 ✉ fginfo112@fira.or.kr



참고 3 2025년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지급 결과

□ 개요

- (목적) 폐어구 반납 소요비용과 유실율(30%) 고려, 폐어구 반환시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하여 보증금제 정착 및 폐어구 회수 촉진
 - * 재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 (지급대상) 폐어구를 ①회수관리장소에 반납하고, ②반환정보가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에 등록 완료되어, ③수매비 수급 및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어업인
 - * (포인트 금액) 기존어구: 400원/개, 보증금어구: 종류별 700원,1,000원,1,300원/개
- (지급방법) 단기적으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되, 장기적으로 현금 또는 어업 기자재 구매와 연계하여 어구생산업체 참여 유도
 - * 회수실적별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인별 은행 계좌로 지급

□ 회수촉진포인트 운영 결과

-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기존 사용 통발) 34,865개에 대해 회수촉진포인트 14,168,600원 지급('25.6.5.)
- 통발 종류별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안)

구 분	보증금	포인트 구성			최종환급금 (보증금+포인트)
		반환비용	유실률 보전 (보증금액의 30%)	계	
보증금어구	1,000원	400p	300p	700p	1,700원
	2,000원		600p	1,000p	3,000원
	3,000원		900p	1,300p	4,300원
기존어구	250원 (수매비)	400p	-	400P	650원

참고 4 (이미지) 통발 종류별 회수촉진포인트 지급

구분	보증금	포인트 구성			최종환급금 (보증금+포인트)
		반환비용	유실률 보전 (보증금액의 30%)	계	
보증금어구	1,000원	400p	300p	700p	1,700원
	2,000원		600p	1,000p	3,000원
	3,000원		900p	1,300p	4,300원
기존어구	250원 (수매비)	400p	-	400p	650원